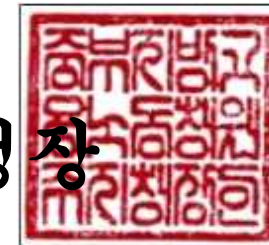
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및 보관기관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07. 07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장

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·취업지원 종료 처분
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9조,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6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송달불능사유	주소
			처분사유(종료일)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강○일	1990.01.13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·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·취업지원 서비스 종료 (2026.06.25.)	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② 종료 결정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취업지원 신청 제한 (3년간 재참여 제한)	폐문부재 보관기관경과	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조업로 391 (이하생략)

4. 공고기간: 2026.07.07. ~ 2026.07.21.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원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박종숙(Tel. 033-769-092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